



- 팩스 : 별지 제55호의2 서식,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로 전송

○ 월보수액 신고 양식 다운로드 방법

- 법제처 (<https://www.moleg.go.kr>) →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색 → 하단부 서식 클릭 → 별지 제55호의2 서식 한글 또는 pdf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운로드

3. 보험료 계산 및 원천 징수 관련 사항

○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

- {운임 × 경비율(49.9%)} × 보험요율 1.76% (사업주, 종사자 각각 0.88%)
- 예시) 차주 운임 10만 원의 경우  

$$\cdot [\text{운임}(10\text{만 원}) \times \text{경비율}(49.9\%)] \times \text{산재보험요율}(0.88\%) = 440\text{원}$$

※ 노무제공자 보험료 모의 계산기(<https://www.comwel.or.kr/comwel/bohumcal4.jsp>)에서 보험료 계산 가능

○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운임 지급

- 차주 운임 10만 원의 경우 산재보험료 440원을 공제한 99,560원 지급

○ 익월 말일까지 신고 후, 익익월 부과되는 산재보험료 880원 (사업자분 포함) 납부

○ 부가세는 산재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님

-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으로 산재보험료 계산

4. 기타 참고사항

○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를 통한 신고의 경우 개인(대표자)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

○ 신고 누락 또는 오류 방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([total.comwel.or.kr](https://total.comwel.or.kr))를 통한 신고를 권고

○ 차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,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제출 가능

- 단,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특정품목산업 화물차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필수 제출

○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, 팩스

- 협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

센터명	관할구역	전화번호	팩스
서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	서울, 강원, 경기 (의정부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포천시·연 천군·남양주시·구리시)	02-6946-0500	0505-290-3102
		02-6946-0501	0506-175-1203
		02-6946-0530	0506-175-1204
부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	부산, 대구, 울산, 경북, 경남	051-790-0315	0505-132-1102
		051-790-0301	0505-132-1103
경인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	인천, 경기 (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)	032-712-0502	0505-134-1102
		032-712-0503	0505-175-1103
대전특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	광주, 대전, 전북, 전남, 충북, 충남, 세종, 제주	042-718-0601	0505-139-1102
		042-718-0613	0505-250-1103

- 붙임 :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월보수액 신고 화면  
 ②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(별지 제55조의2)  
 ③ 2025 산재·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(협회 전용자료실 참조)  
 끝.

##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